

政府와 市場經濟⁽¹⁾

林 鍾 哲

시장은 시장균형과 교환정의를 동시에 실현시키는 것으로 信奉되어 또 다른 調整機制인 평평을 ‘값싼 정부’론으로 축소하고 ‘야경국가’론으로 추방하고자 하였다. ‘자동조절기능을 갖는 시장체계’(a system of self-regulating markets)를 완성시키면서 시장은 시장균형과 교환정의실현에 그대로 성공했고 국가기능은 자유체 약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족했다. 그러나 시장이 변질되어 附合契約이 일반화되면서 교환정의가 위협받자 국가는 재산권행사제 약(독점금지법), 雙方獨占형성을 통한 세력균형(노동조합법)을 모색하는 한편 최저임금법을 통해 종래 私法秩序에 맡겼던 시장에 公法의介入을 하게 되었다. 修正資本主義에 와서는 사정이 一變하였으니 대공황을 계기로 교환정의보다는 시장균형이 더 중시되어 총수요규제를 통한 국가의 안정화노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교환정의는 국가정책과 학문적 논의의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등장한 이후 市場이 발전, 변질되어 감에 따라 法과 제도에도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 論文에서는 시장의 本質이 무엇이며 市民社會성립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변질, 왜곡되어 왔으며 이에 대응하여 市場과 法, 經濟와 國家간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하는 역사적 변천을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의 장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1. 市場이란 무엇인가

1.1. 定 義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시장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 또는 시장과는 완전히다르다. 그것은 경제사나 經濟人類學에서 말하는 시장과도 전혀 내용이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시장 또는 경제사, 경제인류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특정한 교환장소, 장터(market place)를 말하는 공간적 개념이다. 이에 반하여 경제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장은 특수한 기구(institution)를 말하는 분석적 개념이다[Neale(1957, pp. 357~372)]. 경제사 또는 경제인류학에서 말하는 시장 즉 장터에서는 물건이 교환되었다는 사실

(1) 이 연구는 財團法人 一洲學術文化財團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appropriational movement), 그리고 부수적으로 상품의 공간이동(locational movement)이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이 교환되었는가 하는 교환규모가 중요시된다. 이에 반하여 경제이론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어떠한 가격이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그 가격에서 需給殘量 없이 시장이 一掃되었는가(clearing the market)의 與否다.

경제이론에서 중요시하는 시장은 곧 供給・需要價格機制(supply-demand price mechanism)이다. 공급이란 일정기간중 시장에 유입되는 재화수량을 말하는 흐로우(flow)로 이는 가격이 상승하면 반드시 증가하는 성질을 가져야 한다. 가격상승이 공급증대를 유발하는 것은 첫째 비싸게 생산하는 생산자(higher cost producer)도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하고 둘째 그 상품의 태재화지배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종래 판매할 의사를 갖지 않던 재화보유자로 하여금 그 재화를 팔도록 하기 때문이다.

수요는 구매자가 특정가격으로 사고자하는 재화수량을 말한다. 사람들의 嗜好가 일정한 경우 특정재의 가격하락 또는 태재화가격상승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반대로 재가격상승이나 태재화가격하락은 그 재화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이처럼 시장에서는 재화 流出入이 가격에 의하여 규제된다.

가격기제란 가격과 수요・공급간의 체계적인 반작용을 말한다. 가격은 재화를 시장에 流入케 하고(=공급) 동시에 재화를 시장밖으로 流出케 한다(=수요). 이처럼 가격은 수요・공급량을 규제하지만 동시에 가격은 수요・공급량에 의해 규제되기도 한다.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가격은 상승하고 반대로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하여 가격과 수요・공급량간의 이같은 체계적 작용・반작용을 통하여 需給均衡이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主體的으로 볼 때 공급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다수의 공급자를 의미한다. 시장이란 定義 그대로 ‘一物一價法則이 관철되는 곳’이므로 수송비가 가격에 영향을 줄 만큼 地理的相距가 크면 그것은 單一市場이 아닌 복수시장으로 변한다. 다수의 공급자란 단순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적은 공급량을 갖고 있는 공급자를 말한다. 한편 수요 역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수요량이 적은 다수의 수요자를 말한다.

이처럼 가격은 특정한 수요자 또는 특정한 공급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더부르고 깎는 에누리(higgling and haggling)를 하는 사이에 확정된 특정한 개인과는 전혀 관계없는(impersonal) 확정가격(bargained price)이다.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가격인 시장가격은 정부 또는 독점기업이 態意的으로 설정한 正札價格(fixed price)

과는 다르다. 정찰가격은 특정한 개별주체에 의하여 人爲的으로(personally) 결정된 가격인데 반하여 홍정가격은 특정한 개별주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沒個人性(impersonality)이 그 본질적 특징이다.

가격은 정보전달, 需給媒介變數, 소득결정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단순한 시장이론에서는 필요한 모든 경제적 정보가 가격변동이라는 형태로 모든 경제주체에 대하여 차별 없이, 순간적으로, 아무런 비용없이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한편 가격상승은 수요감소·공급증대를, 가격하락은 수요증대·공급감소를 유인하여 시장에서의 需給을 균형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 끝으로 홍정을 통하여 성립된 시장가격은 교환에 참가한 兩當事者들의 소득크기를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1.2. 市場의 勃興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은 특징을 가진 機構가 곧 시장이다. 中世초까지도 이같은 특징을 갖는 시장은 유럽에조차도 없었다. 단지 장터, 경제사나 경제인류학에서 말하는 시장이 大市(Messe) 또는 祭市(fair)와 週市(market)란 명칭으로 불리며 존재하였을 따름이다. 장터가 시장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中世말부터이니 祭市를 巡歷하던 遠隔地主이 祭市주변에 定住하면서 형성된 商人聚落이 시장의 萌芽였던 것이다.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생겼다. 첫째로 經濟主體 즉 시장참가자가 종래의 剩餘財를 가졌던 소비자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手工業者 또는 상인으로 바뀌었다. 둘째로 종래 百貨店식이던 시장이 魚시장, 가축시장, 곡물시장등으로 전문화되었다. 一物一價法則이 성립되는 곳이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定義중 한 조건인 一物一市場이 이 때부터 충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market)이란 낱말과는 달리 소비자중심의 週市가 아니라 스터브리찌(Stourbridge), 샹파뉴(Champagne), 라이프찌히(Leipzig) 같은 도매상중심의 祭市가 시장의 母胎가 되었다. 세째로 市場管理者가 사원이나 영주로부터 상인, 自治都市로 바뀌었다. 시장에 대한 領主壓制를 배척했던 상인길드의 투쟁이 성공하여 상업도시=시장은 자치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치를 쟁취하였다고 해서 장터가 그 즉시 시장으로 승화된 것은 아니다. 상공인=시민(burgess, bourgeois)은 시장에서 市場外의인 요인, 비경제적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시장을 醇化시키기 하게 되었다. 시장에 개입하는 시장외적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력 즉 국가권력이었고 이에 대한 시장 즉 경제의 대응은 두 가지 형태를 차례로 취하게 되었다. 첫단계에서는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만 배제한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전면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작용하는지 시민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국가권력行爲準則을 엄격히 규정한다면 시장원리는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것이 곧豫測可能性原理이고 그 결실이 行政에 있어 法治主義, 刑政에 있어 罪刑法定主義, 稅政에 있어 租稅法定主義였다.

절대왕권 및 前期的 獨占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상인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권력은 시장=경제에 개입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산업자본주의초기 단계에 등장한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 夜警國家(nightwatchman's state) 주장이 곧 그것이다. 君主(sovereign)=국가 기능은 國防, 司法, 公共事業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스미스(A. Smith) 주장은 그 白眉라 할 수 있다[Smith(1976, pp. 687~688)]. 노동을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으로 구분한 스미스理論은 국가를 시장에서 추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3. 市場의 主體

시장은 分散的 경제주체에 의한 자유로운 商品處分의 장이라고 생각되었다. 시장에 참가하는 兩當事者 즉 수요자와 공급자 또는 家計와 企業은 동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대등한 힘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想定되었다. 原子的 個人(atomistic individual)像이 곧 그것인데 소유와 노동이 분리되지 않은 小商品生產者가 그 原型이었다. 이들은 財產的 活動을 가능케하는 所有=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소유는 物的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勞動力도 그 범주에 속하였다.

시민인 경제주체간 관계는 자유의사의 合致인 계약이 토대가 된다. 시장은 경제주체에게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 서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제관계, 계약내용에 대하여 마음대로 교섭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하여 이같이 교섭한 결과 얻게 된 合意를 토대로 체결된 契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 近代私法이었다.

자유계약은 시장참가자=교환당사자들의 이익을 互讓(give and take)원리에 근거하여 서로 半分하게 하는 等價交換裝置이며 등가교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던 것은 시민의 生存權이었다. 따라서 사기나 협박에 의한 不當利益에 대하여 손해본 사람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준 것이나 카르텔契約을 이익조정이 아닌 시장지배를 위한 계약으로 간주하여 當然無效(per se illegal)로 한 것 등은 시장의 궁극목표인 등가교환원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시장이론에서 경제주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첫째 그가 A보다 B를, 또 B보다 C를 選好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A보다는 C를 선호해야 한다. 이 移動性이 바로 경제적 合理性이다. 둘째로 그는 반드시 極大化行動을 하여야 한다. 극대화대

상은 반드시 경제적 이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또는 憎惡라도 상관없다. 세계로 그는 항상 目的과 手段을 엄격히 구분한다. 그에게는 手段價值는 언제나 수단가치이지 절대로 목적가치가 될 수 없다[Lutz and Lux(1979, pp. 61~62)].

이상이 시장참가자 즉 합리적 경제인(rational economic man)의 속성이다.

$$\text{행복} = \frac{\text{물질적 소비}}{\text{욕망}} \quad [\text{Samuelson}(1980, p. 716)]$$

라는 식에서 욕망은 변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고 물질적 소비를 크게 함으로써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이 곧 경제인이다. 시장이 완성되는 것은 경제가 欲望充足단계에서 蓄積단계로 이행한 이후인데 시장主體인 경제인은 바로 축적단계적 인간인 것이다.

경제인은 태초부터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로빈스(L. Robbins)는 유럽思想의 兩大源流인 헬레니즘 및 헤브라이즘 모두에서 축적을 거부하고 때로는 죄악시한 것을 例證하고 있다[Robbins(1968, pp. 150~518)]. 文藝復興에서 시작하여 宗教改革, 啓蒙主義를 거치는 오랜 기간동안 이데올로구들에 의하여 끊임없이 教化(indoctrinate)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주의는 上向의으로 형성되어 갔던 것이다. 아퀴나스(T. Aquinas)의 不姪說이 칼빈(J. Calvin)의 肯定說로 바뀌어간 利子에 대한 견해에서도 우리는 그 一端을 볼 수 있다. 이렇게 4백여년에 걸쳐 서서히 西유럽에서 형성되어 갔던 특이한 人間類型인 경제인이 바로 시장과 시장경제 및 資本主義를 擔持하는 주체가 되었다.

‘공급은 그 자체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J.B. Say) 法則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시장이 발흥하던 초기에 있어서는 생산자는 곧 소비자였다. 그들은 지금의 시장에 있어서와는 달리 언제든지 立場을 바꿀 수 있었다. 이같은 시장경제主體를 공급자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본시 一人所有者겸生產者겸經營者(one man owner-producer-manager)였다. 물론 초기에는 즉 장터에 잉여생산물을 가지고 나타났던 소비자=생산자였을 때에는 그는 一人所有者겸生產者겸經營者겸販賣者(one man owner-producer-manager-seller)였다. 그러나 장터가 自治都市=시장으로 발전하면서 최초로 판매자기능이 달락하여 市場主體는 一人소유자겸생산자겸경영자로 定着되었다[Strachey(1956, p. 50)]. 소유·노동분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단계에 있어서는 경제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市場機制는 그대로 완전하게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1. 4. 市場의 意義

1. 1. 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시장이 定着되었을 때 시장은 더 이상 중상주의국가의 ‘숙달된 손’(skilful hand)에 의한 간섭과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시장경제이데올로구들은

생각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스미스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거나 제약을 가하는 불평등한 제도가 완전히 타파되면 自然的 自由라는 명백하고 단순한 체계가 저절로 성립된다.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나름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노동과 자본 모두를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다른 어떤 계급의 사람들의 그것과 경쟁을 시킬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Smith(1776, p. 687)]. 그렇더라도 私益追求를 위한 이같은 경쟁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어 사회조화를 실현시키게 된다고 스미스는 믿고 있었다. 물론 경쟁은 반드시 優勝劣敗를 결과한다. 그러나 시장=교환은 分業을 전제하는데 분업으로 인한 생산성상승은 엄청난 것이므로 貧富差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아래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럽君主의 살림이 근면하고 겸약한 농민살림보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差는 농민살림이 1만명의 벌거벗은 야만인들 생명과 자유의 절대적인 지배자인 아프리카王의 살림보다 월등히 많은 것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다’ [Smith(1776, p. 24)]. 따라서 弱者救濟를 위한 경제정책 즉 시장에 대한 국가의 권력적 개입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시장경제이데올로구들은 생각하였다.

더구나 시장에서 ‘특혜를 주거나 제약을 가하는’ 온갖 경제외적 힘을 추방하고 나면 마콜리(T. Macaulay)卿 말대로 ‘성공은 근면과 종명에 대한 당연한 보수’이고 ‘실패는 게으르고 어리석은 데 대한 당연한 처벌’ [Carr(1960, p. 22)]이고 또 劣敗者라 하더라도 아프리카王보다 그 살림이 풍족하므로 그 처벌은 결코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시장경제이데올로구들 생각이었다.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업적한 의미의 시장경제체제가 성립되어가던 시절에는

자신의 노동이외의 수단으로 얻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므로 각개 인간 차이는 주로 개인적 능력과 노력의 차이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개인적 成敗나 전체로서의 경제적 조화도 경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었다. 고전적 자유주의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경쟁이란 단순히 자본주의경제를 규제하는 非人間的 機構나 단지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경쟁이란 자유로운 개인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며 영웅의 試金石이었다. 경쟁에 의하여 사람들은 獨立不羈한 개인이란 전설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경제적 시장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자유계약결혼, 개신교회, 자발적 단체, 경쟁적인 정당을 갖고 있는 민주국가 등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독립적인 개인이 자유롭게 경쟁 함으로써 우월한 자가 승리하고 인간성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자유주의자들은 信奉하고 있었다. 경쟁은 자유주의시대의 社會統合원리였고 또 고진적 자유주의자를 생활양식의 기본특징이기도 하였다 [Mills(1956, pp. 11~12)].

고 밀즈(W. Mills)는 평가하고 있다.

2. 市場의 變質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시장, 좀더 넓게 본다면 자동조절기능을 갖는 시장체계는 20세기 초까지 대략 2백여년동안 존재하였으며 특히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理想型에 매우 흡사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Neale(1957, p. 365)]. 폴라니는 이같은 자동조절시장이라는 특이한 기구를 기초로 국제간 세력균형, 국제금본위제도 및 자유국가가 탄생하였고 이들 네 가지 기구로 말미암아 19세기는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한다[Polanyi(1944, p. 3)]. 그런데 이같은 시장이 19세기중엽부터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1. 技術革新

증기기관발명을 계기로 섬유산업과 석탄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진 산업혁명 이후에도 원자적 개인으로 구성되던 시장은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스미스가 理想으로 생각하고 있던 一人소유자겸생산자겸경영자의 세계는 차츰 소멸되기 시작하였다. 농촌解體로 토지에서 축출된 농민들뿐만 아니라 시장경쟁에서 도태되어 생산수단을 상실하게 된 중소상공인들도 勞動力이외에는 달리 所有가 없는 무소유의 노동자로 轉落하게 되었다. 이처럼 무소유의 노동자들이 노동을 專擔하는 하나의 계급을 형성해 감에 따라 시민은 소유와 경영에만 전념하고 노동은 노동자계급에게 一任하는 所有・勞動의 분리가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소유・노동분리는 19세기 중엽에 일어난 철강산업 및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小商品生產의 세계에 있었던 상품판매경쟁은 그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술혁신경쟁을 유발하였다. 이같은 기술혁신경쟁은 지멘스・마르떼法 등 철강생산부문에서 일어난 기술혁신을 계기로 하여 資本獲得을 둘러싼 또다른 경쟁을 유발하였다.

상품판매, 기술혁신, 자본획득이라는 세 가지 경쟁형태 중 자본획득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즉 상품판매경쟁에서 승리하려면 原價切下가 필수적이었는데 기술불변을 가정할 때 원가절하는 大量生產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대량생산을 가능케 하려면 규모경제 따라서 자본의 巨大化가 불가결한 요소였다.

한편 지멘스・마르떼法 등 근대적인 제철기술은 방대한 설비 투자=埋沒資本이 필요하였다. 사실 막스 베버(M. Weber)가 말한 근대적, 합리적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대

규모의 고정자본설비란 철강산업에서의 기술혁신을 계기로 하여 일반화된 현상이었다. 年產 150만톤이라는 생산의 최적 규모 실현을 위해서는 종래의 대장간적인 생산기술과는 달리 방대한 고정자본설비가 선행되어야 했다. 또 철도건설을 위해서도 鐵路 1마일당 7백톤 이상의 강철이 필요한 등 제2차 산업혁명으로 구체화된 기술혁신은 방대한 자본수요를 야기시켰다. 자본에 대한 대량 수요는 자동차, 화학, 전신전기 등 산업분야에서 일어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기술혁신 즉 제3차 산업혁명에 의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들 제3차 산업의 主導部門은 비단 대량의 매몰자본沈下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무, 銅, 니켈 등 유럽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료를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未開發地域의 奧地에서 개발, 생산, 이용하기 위해서도 직접적 생산활동부문이 외에서 방대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2.2. 制度變化

제도란 본시 기술과 그 생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제도가 갖는 이같은 속성을 극단화하여 마르크스(K. Marx)는 생산관계 특히 소유관계인 하부구조는 생산력에 의하여 一義의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회관계 제1기본법칙 (the first basic law of sociology)을 정립하여 경제적 결정론을 주장한 바 있다.

제도가 기술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결정된다는 경제적 결정론보다는 경제적 요인과 제도 등 비경제적 요인이 반드시 上下・主從관계를 갖는다 보다는 경우에 따라 때로는 경제적 요인, 또 때로는 비경제적 요인이 특정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主導的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Myrdal(1968, pp. 1859~1864)]. 그러나 농업혁명이 原始共同體社會를 封建制社會로, 산업혁명이 봉건제사회를 資本主義社會로 변모케 한 역사에서 보듯 중요한 기술혁신은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철강산업에서의 기술혁신 및 철도라는 새商品發明=革新은 하나의 중대한 제도변화를 가져왔으니 주식회사제도의 一般化가 곧 그것이다. 주식회사제도는 1602년 東印度會社를 그 효시로 삼는다. 그러나 法人企業設立自由와 資本多數決原則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 주식회사제도는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철강산업 및 철도산업은 방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合名 또는 合資會社 같은 共同資本(joint stock) 형태나 東印度會社 같은 特許會社 형태로는 충당될 수 없었다. 균등한 금액 단위로 不特定多數인이 갖고 있는 저축=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근대적 주식회사제도만이 철강업을 비롯한 첨단기술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대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56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주식회사법제정은 이같은 경제적 변화, 경제적 요구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그런데 倍數原理(principle of multiple)가 말하여 주듯 複數의 경제주체로 구성된 주식회사와 단일경제주체로 구성된 개인회사간에는 대등한 힘의 관계가 있을 수 없다. 그 결과 이들사이에 等價交換이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들사이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현상은 19세기 후반이후의 經濟史에서 소연하듯 不等價交換일 뿐이다. 이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이데올로구었던 스미스는 주식회사=共同資本原理를 비도덕적인 것이라고 하여 배척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50년대 영국사회는 첨단기술이 주는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交換正義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을 무릅쓰고서도 주식회사제도를 申告主義로 고쳐 자유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환경의를 계속 실현, 유지하기 위하여 設立許可主義를 고수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兩者擇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까지도 설립허가주의를 적용해왔던 金融產業에 대해서도 法的 要件만 갖춘다면 申告만 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1862년 영국에서의 會社法改正은 영국사회가 기술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交換正義를 저버린 마지막 社會選擇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영국경제는 10년도 채 못되어 對內적으로는 獨占資本主義, 對外적으로는 帝國主義로 변질되어 갔다.

2.3. 變質의 內容

경쟁은 優勝劣敗과정을 통하여 원자적 개인으로 구성되었던 流動的인 시장을 소수의 거대한 구성단위로 이루어지는 硬直의인 불완전시장으로 변질시켰다. 이같은 과정에 대하여 스트레이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관습, 신분, 情緒위에 構築되었던(身分社會의——필자) 모든 관계를 분쇄한 것이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可恐할 힘이었다.……다수의 판매자가 다수의 구매자와 대결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공통의 도가니속에 모든 것을 집어던져넣은 것은 경쟁이라는 압도적 추세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상품 즉 교환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사람들조차도 개별적 경제인으로서 완전히 원자화하였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경쟁은 어느 정도이상 지속되고 강화되자 반대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사회를 해체하는 粉碎力이기는커녕 새 관계와 새 기구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완전경쟁시장이라는 매끄러운 流動體속에서 새로운 사회·경제기구라는 團體를 형성하여 流動體의 同質性을 수정하고 끌내는 파괴하게 되었다[Strachey(1956, pp. 14~15)].

원자적 단위가 거대화한 것은 巨大構成單位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규모가 일정할 때 생산단위가 거대화하면 그 수효는 불가피하게 적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시장은 가격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소수의 구성단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3.1. 競爭形態變化

시장에서는 가격은 특정한 개별경제주체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며 이같은 흥정가격이 갖는 정보전달기능, 매개변수기능을 매개로 시장균형이 실현되며 동시에 互讓원리에 입각한 등가교환이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점자가 또는 共謀(collusion)를 통하여 寡占者들이 가격을 지배하게 되면 가격은 더 이상 정보전달기능과 매개변수기능을 하지 못한다. 人爲的으로 결정된 가격이 전달하는 정보는 수요·공급 양쪽 당사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온갖 조건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獨占者의 收奪意欲일 뿐이다. 독점자가 恣意로 설정한 正札價格인 독점가격은 가격과 需給量이 서로 對應的 變化를 하는 가운데서 수요·공급을 일치시켜 시장을 一掃하는 매개변수기능을 하지 못한다. 가격을 매개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가격 및 고정된 수요량(=수요독점시장) 또는 공급량(=공급독점시장)에 공급량 또는 수요량이 일방적으로 순응할 뿐이다. 끝으로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시장(=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평균수입=한계수입=한계비용이라는 조건이 항상 충족되어 구매자의 희생(=지급한 상품가격)은 항상 공급자의 희생(=생산에 든 한계비용)과 동일하다. 가격=한계비용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等價交換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가격=한계비용은 완전경쟁시장에서만 실현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완전경쟁 시장가격인 흥정가격만이 등가교환=교환정의를 실현시켜주는 소득결정기능을 갖는다. 이에 반하여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가격=평균수입은 언제나 실현되고 한계수입=한계비용도 항상 실현된다. 그러나 가격(=평균수입)은 한계비용(=한계수입)과 언제나 같지 않다. 수요독점인 경우는 (구입)가격을 한계비용보다 작게 함으로써 또 공급독점인 경우는 (판매)가격을 한계비용보다 크게 함으로써 그 차액을 收奪한다. 따라서 정찰가격이 갖는 소득결정기능은 흥정가격이 갖는 소득결정기능과는 달리 등가교환을 실현시켜주지 못한다. 정찰가격은 不等價交換을 恒久化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인 交換正義를 유린한다.

이런 의미에서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은 결코 시장이 요구하는 경쟁이 아니며 그 代替物이 될 수 없으며 有效競爭(workable competition)은 그것이 아무리 유효하게 작용하더라도 가격=평균수입=한계수입=한계비용이라는 조건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

2.3.2. 國內的 不均等發展

시장은 등가교환 따라서 교환정의를 실현시켜주는 유일한, 절대적인 기구라고 생각되었다. 그렇기에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으로 흡수하여 교환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며 심지어 토지用役과 노동력 등 인간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것까지도 상품으로서 시장에 흡수하

였던 것이다. 그리고 시장가격은 호양원리에 입각한 교환 즉 등가교환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소득결정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을 매개로 하며 모든 산업, 모든 종류의 노동은 등가교환에 기초하여 均等發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였다.

그러나 시장을 그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제도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도인 자본주의하에서 萬事는 最善의 상태를 지향한다’ (All is for the best in the best of all possible worlds) [Robinson(1957, p. 5)]는 시장경제이데올로구의 낙관적인 漢定調和觀은 시장경제체제가 완료되기도 전에 파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산업간, 계층간 지역간 발전이 균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등을 深化시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갔던 것이다.

2. 3. 3. 國際間不均等發展

국가간에 작용하는 市場機能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밀(J.S. Mill)에 의하여 완성된 國際價值論이고 그 기능의 厚生的側面을 미리 설명한 것이 리카도(D. Ricardo)의 比較優位說이었다. 밀의 이론은 비록 시장이 국경이라는 經濟外的인 장벽에 의하여 두 개로 隔離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그대로 기능하며 等價交換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한편 리카도의 비교우위설은 비록 國力이나 生產力 또는 產業活動 형태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과 分業(=特化)은 무역이익(gains from trade)이라는 加外利潤을 반드시 창출하며 그 이익 역시 互讓原理에 근거하여 交易兩當事國에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것이었다.

국제교환=무역에 관한 數字例에서 리카도는 포르투갈은 영국보다 金을 2배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國力差를, 또 면직물생산을 위한 영국의 노동력投入은 年 100명으로 포르투갈의 90명보다 많고 포도주생산을 위한 그것은 120명으로 포르투갈의 80명보다 많다고 하여 生產性隔差를, 끝으로 영국은 면직물 따라서 工業生產활동에, 포르투갈은 포도주 따라서 農業생산활동에 특화한다고 하여 산업활동형태가 다름을 분명히 전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국제분업(=시장)을 통하여 창출된 剩餘인 무역이익은 양당사국에 均分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市場이 등장하고 그것이 非白人社會에 移植된 다음 국가간 경제발전은 리카도나 밀의 이론과는 달리 불균등발전의 樣相을 深化시켜 갔다. 물론 植民地制度라고 하는, 스미스를 비롯한 시장경제이데올로구들이 그처럼 그 철퇴를 주장하였던 ‘특정국에 특혜를 주고 다른 특정국에 제약을 가하는 불평등한 제도’가 국제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성립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제도적 요인을 우리는 참작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公式的殖民地(formal colony)가 아닌 中國 또는 라틴 아메리카諸國의 경제발전사례를 보더라도 그 樣相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랜리아 등 소위 最近定着地域(Regions of Recent Settlement)의 그

것과는 판이한 富益富・貧益貧의 跛行的 發展을 하였던 것이다[Nurkse(1961, pp. 282~304)].

2. 3. 4. 蕪積과 技術進步

시장경제에서 저축=자본축적은 개인이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이론에서도 그렇게 想定되어 家計가 黑字(=貯蓄)主體로, 기업은 그 저축을 借入하는 赤字主體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축적=저축공급에는 2단계적 변화가 있었다.

첫째 會社法개정으로 주식회사설립에 準則主義가 도입되자 기업은 企業主가 아닌 不特定多數人으로부터 저축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一人所有者겸生產者겸經營者の 개인적 회생에 의한 저축공급 즉 資本蓄積(accumulation of capital)에 추가하여 不特定多數한 不在地主格株主로부터의 저축공급 즉 資本集中(concentration of capital)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를 통하여 資本形成은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들 자본은 負債인 外部資金(external finance)으로 外生的인 것이어서 株主에 의한 외부적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하에서는 자본공급형태가 달라졌다. 이같은 두 번째 변화는 거대화된 기업이 이윤중 일부를 배당하지 않고 留保하고 이 留保利潤을 재투자한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같은 自己金融(self-finance) 또는 내부금융(internal finance) 비중이 커짐에 따라 자본은 기업을 제약하는 外生變數가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는 內生變數化하였다.

한편 기술은 시장경제초기 단계에서는 거의 모두가 작업장내부에서 일어난 必要에 따라 개발되었다. 따라서 기술은 이 때까지만 해도 內生要因으로 시장에 의하여 통제되었었다.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 2차 산업혁명이후나 화학, 전기통신, 자동차산업을 중심한 제 3차 산업혁명이후에도 기술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市場外的 要因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원자력, 항공, 전자, 합성제 산업을 중심한 소위 科學・產業革命(the scientific-industrial revolution)이후 기술은 作業場=市場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대량의 연구개발투자를 토대로 개발되고 그같은 기술혁신이 경제=시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오히려 지배하고 시장에 의한 통제에서 벗어난 外生變數로 작용하게 되었다[Strachey(1956, pp. 32~33)].

이처럼 外生變數이던 자본이 內生變數化하고 內生變數이던 기술이 외생변수화한 것은 시장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갤브레이스는 轉倒된 因果繼起(revised sequence)라고 하여 시장이 기술을 지배했던 순수한 시장경제상태의 公認된 인과계기(accepted sequence)와 구별하고 있다[Galbraith(1967, pp. 211~218)].

2. 3. 5. 所有・勞動 및 所有・經營의 分離

스미스, 리카도를 비롯하여 초기 시장경제이데올로구들이 생각한, 그리고 市民社會法의 기본전제가 된 경제주체는 一人所有者겸生產者겸經營者이었다. 시민사회가 그 法과 制度를 통하여 확립하고자 하였던 交換正義의 주체적 조건이며 스미스로 하여금 공동자본=주식회사원리까지 거부케 하였던 이 理想像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시장이란 스미스가 생각했듯 자유경쟁 그 자체였고 경쟁은 優勝劣敗 원칙에 따라 비효율적 경쟁자를 도태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巨大企業을,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수단에서 해방되어 勞動力이외의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를 생산하게 되었고 노동=생산자기능은 이들 노동자 계급에 의하여 專擔되는 所有·勞動分離가 19세기前半까지는 거의 완료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독립적인 개인이 자유를 확립하고 인간성을 향상시키고 인간을 참다운 獨立不羈의 존재로 승화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원리라고 생각한 시장경제理念과는 정반대되는 결과였다.

1930년대에 오면서 다시 소유·경영이 분리되어 시장=경쟁이란 試金石을 통하여 英雄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던 진취적인 기업가는 단지 配當이라는 地代收入에 寄食하는 제2의 不在地主로 전락하였다. 이 역시 시장경제를 위해서는 치명적인 변화이니 기업가가 단순한 配當受領者로 변질하였다는 사실에서 슘페터(J.A. Schumpeter)는 시장제도에 입각한 資本主義經濟의 멸망을 예고하였다. 그에 의할 때 자본주의는 創造的破壞(creative destruction)의 연속이라는 動態過程인데 天才의인 기업가(entrepreneur)에 의하여 수행되던 新結合=창조적 파괴가 官僚化, 定型化되면 자본주의에 대한 支持분위기가 사라지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볼 때……자본가계급은 기업가에 의존하며……기업가와 함께 살며 또한 함께 죽는다. 완전히 관료주의화한 거대기업은……궁극적으로는 기업가를 축출하고 자본가계급 자체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Schumpeter(1943, chs. 12~13)]. 그리하여 자본주의경제는 서서히 사회주의로 전환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같은 전환의 萌芽는 소유·경영의 분리에서부터 싹튼 것이다.

2. 3. 6. 二重經濟

시장이란 본래 경제적 요인 즉 市場內生變數간의 상호조정에 의하여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自動調節裝置를 말한다. 이같은 자동조절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가 經濟外의 要因 특히 政治를 시장밖으로 추방하는 것 즉 隊산 정부, 夜警國家, 예측가능성원리, 자유방임주의였다. 그리하여 적어도 1930년대까지는 政治力を 의미있는 규모로 시장에서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가지 예로 미국연방정부의 경제적 비중을 본다면 1901년에 고용에서 0.8%,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연방정부지출이 3.0%이었으며 1936년에도 그 비

중은 각기 1.6%과 10.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비중은 급격히 커졌고 그것은 미단 소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시장=民間部門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浮上하였다. 헨슨(A.H. Hansen)은 이를 생산이중경제 및 소비이중경제로 구분하고 이같은 경제를 二重經濟(dual economy)라고 불렀다[Hansen(1941, ch. 20)]. 經濟的 實在의 이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이론에서도 정부를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며 민간부문을 지도·규제하는 경제주체’라고 하여 종래의 순수시장 모형에서의 가계 및 기업이라는 2 경제주체모형을 가계, 기업 및 정부라는 3主體모형으로 수정하고 있다. 이제 경제는 순수한 시장체제를 지양하고 시장=민간부문에 추가하여 계획·명령=정부부문이라는 混合體制로 변화한 것이다.

2. 3. 7. 補完의 不可避性

시장은 힘이 대등한 分散的 經濟主體가 시장 같은 편(same side of the market)에서 서로 경제·균형작용을 하는 가운데 非人格的으로, 즉 특정개인과 관계없이 형성되는 흥정가격인 시장가격에 의하여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그런데 獨寡占이 일반화되면서 경제는 소수의 거대한 조직에 의하여 지배되고 따라서 시장 같은 편에서의 경제·균형작용이 없어지고 가격은 특정경제주체 즉 독점기업에 의하여恣意的으로 결정된 正札價格인 독점가격으로 변질되었다. 이로 인하여 가격은 시장兩當事者를 연결하는 情報傳達機能과 需給을 残量없이 조절하는 媒介變數機能을 상실하고 단지 不等價交換에 근거한所得決定機能만 갖게 되었다. 供給·需要價格機制인 시장은 그 기능이 결정적으로 손상된 것이다.

獨占이 시장=완전경쟁을 대체하기 이전에 있어서도 농산물시장등에서는 소위 鈸狀價格差(Schere)이론등이 실증했듯 가격기제는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여 農工간 等價交換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토지시장 및 화폐시장 등 일부 要素市場에서는 첫째 供給이 外生變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需給自動調節裝置가 작용하지 않았고 둘째 공급의 가격탄력성 및 가격신축성에 문제가 있어 가격은 매개변수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한편 경제주체도 조직이 용이하고 따라서 계획·명령과 효율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것(예컨대 초거대기업이나 노동조합)과 조직이 용이하지 않거나 조직을 거부하는 것(예컨대 日傭勞動者나 자유전문직업인)이 있어 前者에는 시장보다 계획·명령이 더 효율적인 調整機制로 기능하고 후자는 命令拒否의이면서도 시장에 의한 조정 역시 안전하지 못하다.

또 경제객체의 경우도 제조업체처럼 조직이 용이하고 비변하게 시장을 계획·명령으로 내

신하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농업처럼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시장에 의한 조정이 불완전한 것도 있다.

끝으로 경제가 발전하여 더 이상 세이 法則이 타당하지 않게 되면서 사회적 총공급과 사회적 총수요가 일치한다는 일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 되었다.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과 저축을 결정하는 사람이同一人이었던 세이의 세계와는 달리 저축결정자와 투자결정자가 달라진 풍요한 사회에서는 사회적 총공급과 사회적 총수요가 같지 않은 것이正常상태화하여 국민경제는 항상 인플레이션 아니면 失業과 不況에 시달리게 되었다.

경제안정은 사회적 총공급과 사회적 총수요의 크기가 같아야 달성된다. 그런데 사회적 총공급은 短期에 있어서는 이를 크게 할 수 없고 작게 한다는 것은 생산시설의 스크랩化를 말하므로 경제적인 조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에 있어서는 사회적 총공급은 통제 가능한 정책변수가 아니다. 이에 반하여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수입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총수요중 소비는 분배구조, 투자는 자본의 한계효율, 수출은 外國購買力=소득이라는 外生變數에 의해 좌우되므로 정책변수로 이용하는데 엄격한 한계가 있다. 다만 정부지출은 정부가 임의로 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지출 및 租稅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총수요를 규제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되었다.

1815년부터 시작된 恐慌의 역사는 정부가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켰고 1930년대 이후 발달한 巨視經濟分析은 정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어느 정도 이용하여 시장의 어떤 부문에 어떻게 또 얼마만큼 개입하여야 하는가를 밝혀주었던 것이다.

3. 經濟法의 變化發展

시장이 완성되면서 시장기능이 차츰 완벽해지고 시장기능에 대한 信念이 강해지면서 시장은 경제외적인 것을 모두 시장에서 추방하고 모든 경제문제해결을 가격기제에 一任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점이 생겨나서 시장을 침식하자 대등한 세력관계붕괴에 따른 交換正義유린을 막기 위하여 經濟法이라는 형태로 시장행위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그후 시장에 의한 조정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완전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정상상태(normalcy)는 인플레이션과 불황·실업의 交替라는 사실이 인식되면서 정부에 의한 시장규제는 부분적 특수적인 것에서 전체적, 일반적인 것으로 또 準則마련次元에 끌어들여야 했다.

3.1. 競爭資本主義時代

시장경제체제를 성립시키면서 시민사회이데올로구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계약을 통한 財產的活動(=시장교환)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으로서 우선 소유, 계약, 영업, 소비등財產權自由를 생각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시된 것이 所有權自由였는데 농민이 土地를, 소생산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며 또 자유롭게 이용하고 처분한다는 것은 곧 이들에게生存權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소유·노동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장경제성립초기에는 재산권은 시민을 위한生存權과 同義語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經濟客體인 재산권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생존권보장이 未洽하였다. 경제책체인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인 經濟主體에 대한 보장이 불가결하다. 경제적으로 해석할 때 市民的自由 중 나머지 두 가지인 精神的自由와 身體的自由는 재산권자유에 대한 補完裝置의 意味를 갖는 것이다. 신체를 구속받지 않을 자유, 부당하게 체포되지 않을 자유, 재판을 받을 자유 등 신체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침해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재산권침해를 匡正하고 이를 原狀復歸시키는 社會的制裁裝置는 기능할 수 없어 재산권자유는 形骸化하고 말 것이다.

民法·商法 등 시민과 시민간 법률관계를 규정한 近代私法은 상품교환기본질서를 위한 법률로서 그것이 실현시키고자 한 것은 交換正義였다. 상품교환은 반드시 等價交換이어야만 했고 당시 이를 저해한 가장 큰 요인이 국가권력과 前期的獨占이었으므로 이를 추방하고자 한 法理念이 곧 法治主義였다. 法은 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간에 있어야 할 공정한 行爲準則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그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만 국가권력을 시장에서 완전히 추방할 수는 없었으니 그 이유는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최소한도 夜警機能은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課稅權을 토대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租稅國家的市場介入을 규제하고 국소화하고자 한 장치가 재산권자유와 관련하여서는 租稅法定主義였고 또 정신적, 신체적 자유까지도 포함해서는 罪刑法定主義였던 것이다.

경쟁자본주의단계에서 시장을 규제하고자한 특별한 목적아래 제정된 法은 結社 또는 團結을 금지하는 結社禁止法 또는 團結禁止法이었다. 이 법은 표면적으로는 교환에 참가하는兩當事者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단결(association)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결을 금지하는 大義名分은 그것이 대등한 세력관계를 파괴시키고 따라서 등가교환을 끝내시킨다는 것으로 외형상으로는 스미스가 共同資本原理를 배척한 것

과 흡사하다. 그러나 스미스가 자본가에 의한 단결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에 대해 대항책으로 강구되는 노동자들의 단결노력만 처벌되는 것을 비난한 것과는 달리 국가가 제정한 단결금지법은 당시 자본가들의 단결은 이를 눈감아주고 노동자들의 自衛的인 단결만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세계 최초의 단결금지법인 1791년 프랑스가 제정한 르 샤플리에(*le Chapelier*)法을 제안하면서 르 샤플리에(I.R.G. *le Chapelier*)는 “우리들중 아무도 紳商들이 그 공동이익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을 막고자 하지 않는다. ……어떤 기술, 어떤 직종을 막론하고 노동자와 직공들은 그네들 공동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거나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Horvat(1982, p. 9)]고 하였다. 이같은 입법취지에서 우리는 단결금지법이 무엇을 의도하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르 샤플리에法에 뒤이어 1799년에는 영국이 結社禁止法(*The Combination Act*)을 제정하였고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뒤늦은 독일은 1854년에 단결금지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들 단체교섭활동을 탄압하였다.

3.2. 獨占資本主義時代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또 개입하지 못하게끔 하는 기본전제는 첫째 교환당사자들이 대등한 힘의 관계에 있을 것과 둘째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세째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제조건이다.

그런데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이 같은 조건이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어갔다. 첫째 자본축적이 진행되면서 대등한 세력관계가 무너지고 시민은 생산수단을 독점함으로써 지휘권을 갖게된 자본가와 無所有의 經濟客體인 노동자로 분열되었다. 둘째로 기술진보가 規模의 經濟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自然獨占(natural monopoly)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의 공급자’라는 市場의 절대적 조건중 하나가 소멸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자유를 수요자는 상실하게 되었다. 끝으로 규모의 경제가 커짐에 따라 固定資本所要가 커져 수요자가 공급자로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소멸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시장을 제대로 기능케 하는 조건중 하나인 자유로운 參加(및 탈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시장이 變質되어 감에 따라 시장을 통한 等價交換=交換正義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더구나 所有・勞動分離로 말미암아 財產權의 實體도 변질되었다. 즉 소유・노동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재산권은 곧 모든 시민의 生存權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소유・노동이 분리되고 난 다음에는 재산권은 자본가계급이 독점하고 있는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所有保障權이 되어 보호받을 재산이 없는 노동자계급에 대해서는 生存權을 오히려 압박하는 제도로 변질되었다. 여기서 利用・收益・變形・處分에 관한 排他的 權利를 의미하는 재산권

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본시 시장교환이라는 재산적 활동은 자유계약을 절대적 조건으로 전제한다. 계약체결이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로울 때 비로소 互讓原理에 근거한 이익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독점이 형성되면서 교환兩當事者중 한쪽은 상대방을 고를 자유를 잃게 되고 수요독점자 또는 공급독점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무조건 계약하든가 싶으면 그만 두라(take it or leave it)고 하는 附合契約이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剩餘는 독점자에 의해 독점되고 시장은 교환정의를 실현하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콘체른 등 이익조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 市場支配를 위한 계약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1875년에 8개에 불과하였던 카르텔이 1905년에는 385개로 증가하였고 미국에서는 1889~1900년간에 企業結合이 235개나 되고 資本金 규모는 5,198.3백만 달리에 달하였다. 經濟法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이처럼 시장 경제이데올로구들이 想定하였고 경쟁자본주의 단계까지 2세기 가까이 제대로 기능하였던 完全市場이 붕괴되고 獨占이라는 不完全市場이 이를 대신하면서 經濟力이 態意的으로 행사되어 等價交換을 붕괴시켰기 때문이다.

1890년 미국에서 독점방지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 ‘불법적 거래제한 및 독점으로부터 거래 및 상업을 보호하는 법률’인 서먼反트리스트法(Sherman Anti-trust Act)이었다. 이 法은 미합衆國내 여러 州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상업 및 외국무역을 구속하고자 하는 모든 계약, 위임(trust) 및 기타 형태에 의한 결합, 공모 내지 결탁을 모두 위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서먼反트리스트法은 겨우 8개 條文으로 구성된 간단한 것이어서 그 규정이 너무 일반적, 포괄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은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1914년의 클레이튼法(Clayton Act)과 聯邦通商委員會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었고 1936년의 로빈슨·패트먼法(Robinson-Patman Act)이었던 것이다.

독점자본형성에 따른 시장의 變質과 이에 내용한 經濟法制定 움직임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1923년에 經濟力濫用防止令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독점을 규제하는 데 있어 정책적 입장은 미국등에서와 같은 독점금지주의와 영국·덴마크 등에서와 같은 폐해규제주의로 대립된다. 미국이 독점을 그 자체 不法으로 보아 금지·해체하고 있는 데 비하여 영국은 독점 그 자체를 불법화하지는 않고 독점력이 행사되어 폐해가 발생할 때 이를 규제, 치벌하고 있다.

한편 생산수단이 달리 없는 노동자들 생존권은 노동력분할판매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노동력이 매매되는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完全市場일 수가 없고 따라서 등-

가교환이 실현될 수 없다. 이것이 시장 즉 私法秩序分野에 대한 정부개입을 요청한 또 한 가지 이유다.

첫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줄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 가격의 본질적 속성이고 시장은 이같은 가격기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있어서는 가격 즉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력공급이 증가하고 (소위 低賃金・多勞動현상)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력공급이 오히려 감소한다(노동공급곡선의 後方屈折현상). 이로 말미암아 노동시장에서는 가격기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둘째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구매자인 자본가는 구매상품인 노동력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노동력판매자인 노동자는 시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완전시장의 조건인 완전한 지식은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조합 또는 정부기관인 직업소개소라는 市場外的 機構가 없는 한 충족되지 않는다. 이것이 노동력구매자 및 판매자간의 교섭력 즉 힘의 관계를 대등하지 않게 만든다.

세째 노동력이라는 특수상품은 저장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상품과는 달리 값이 좋다고 해서 여러 날 또는 여러 달치 노동력을 한꺼번에 판매하고 값이 나쁘다고 해서 이를 在庫로 저장할 수 없다. 시장가격과는 관계없이 노동자가 팔 수 있는 노동력크기는 하루치 노동력뿐이다.

네째 노동력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장기간, 때로는 여러 世代에 걸쳐서 생산비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 다른 상품일 경우 생산비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은 短期에 한한다. 고정자본의 경제적 수명이 다하면,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력의 경우는 임금이 노동력재생산비를 밀돌더라도 장기 즉 世代에 걸친 노동력판매가 가능하다. 임금은 세대에 걸친 노동력재생산비이므로 당연히 가족들 생계비도 포함한다. 그런데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생산비를 밀도는 임금은 그 구김살을 主婦와 딸들을 위한 생계비지 출감소로 흡수되므로 노동력은 장기에 걸쳐서도 생산비이하로 판매될 수 있다.

다섯째 다른 상품판매에 있어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지배・종속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노동력은 그 판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판매자가 구매자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배・종속관계가 발생한다. 이것 역시 노동시장에서 등가교환이 성립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러한 이유에 추가해서 소유・노동이 분리된 사회에서는 마르크스(K. Marx) 분석대로 노동자는 필요노동(necessary labor)을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잉여노동(surplus labor)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경제문제해결을 시장기제에 一任하기 위하여近代私法秩序는 기본적으로 단결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대등한 힘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유지하는 데 절대불가결한 장치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노동자들 단결을 저지하여 자본가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1791년 프랑스의 샤쁠리에法이나 1799년 영국의 단결금지법 또는 1854년 독일의 결사금지법은 노동자와 자본가 어느 쪽을 막론하고 단결이 대등한 힘의 관계를 봉괴시키므로 이를 事前에 저지한다는 것이 그 名分이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이섯 가지 조건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은 그 출발부터 대등한 힘의 관계를 실현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노동자들 생활이 날로 악화되는 현실에 눈이 뜨고 다른 한편으로는 날로 강화되는 노동자들 요구에 밀리어 국가는 단결금지법을 폐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단결을合法化함으로써 雙方獨占을 통한 세력균형을 도모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1824년에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고 1833년에 공장법, 1847년에 10시간 노동법을 제정한 것 또는 프랑스에서 1864년에 단결금지법을 완화하고 1884년에 이를 폐지한 것은 前者에 속하는 政府對應이었고 영국에서 1871년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것이나 프랑스가 1884년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것은 後者에 속하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결성이 합법화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완전한 등가교환이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이나 서비스業에 있어서와 같이 조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不完全市場의 逆機能은 제어되지 못한다. 정부가 한편으로는 독점금지법 등을 제정하여 재산권=경제력이 邪惡하게 행사되는 것을 예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독점자본과 노동조합간에 雙方獨占에 의한 등가교환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未組織勞動者가 노동시장에서 당하게 되는 不等價交換은 그 같은 법으로는 시정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정부는 종래私法秩序에 위임하였던 노동시장에 公法的介入을 하게 되었으니 最低賃金을法制화한 것이 곧 그것이다. 정부에서 제정한 최저수준을 밑도는 賃金契約은 그것이 아무리 自由意思의 合致인 계약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不法化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1894년 뉴질랜드정부가 제정한 產業調整仲裁法에서 시작된 정부의 최저임금法制화政策은 오스트레리아의 빅토리아州에서 채택된 후 곧이어 1905년에 聯邦調整仲裁裁判所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1909년에는 영국에서 賃金委員會法으로 1938년에는 미국에서 公正勞動基準法안에서法制화되었다. 이같은 움직임속에서 ILO는 ‘최저임금결정제도설립에 관한 조약’(제26호)을 1928년에 성립시켰다.

3.3. 修正資本主義時代

戰後의 경제사회에서 정부는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할 뿐만 아니라 민간경제를 지도, 규제하는 제3의 經濟主體로 公認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市場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經濟外的 存在가 아니라 財政政策을 主軸으로, 金融政策을 補助手段으로 하여 총수요를 의도적, 정체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시장 즉 국민경제를 安定化시키는 기능을 담당한 가장 강력한 經濟主體로 등장한 것이다.

경쟁 자본주의 단계인 1815년부터 시작하여 독점 자본주의 단계 말기인 1929년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는 거의 10년을 遷期삼아 반복적으로 내습하는 恐慌에 시달려 왔다. 내습할 때마다 그 振幅 즉 強度를 크게 하고 범위를 확대시켜온 공황에 대하여 자본주의는 이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극복할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에 케인즈가 有效需要理論을 개발함으로써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된 것이다.

케인즈는 不況과 인플레이션 등 經濟的 不安定이 사회적 총공급과 사회적 총수요가 일치하지 않는 테서 생긴다고 보았다. 사회적 총공급은 短期에 있어서는 그 増減이 불가능하므로 兩者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사회적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길뿐이다. 그런데 사회적 총수요 구성요인 중 소비수요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인 消費性向과 사회적 틀인 分配構造에 의해 결정되므로 政策變數로 이용할 수 없다. 한편 투자수요는 자본의 한계효율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자본의 한계효율은 경제사회가 좌우할 수 없는 外生變數이고 이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작다. 그러나 케인즈는 비록 투자의 利子率彈力性值가 작다지만 이를 인하여 金利生活者를 安樂死시키더라도 산업 자본가를 위한 지원은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수출에서 수입을 뺀 純輸出은 不況의 수출이라는 제국주의적 정체으로 20세기적 상황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총수요요인 중 한 경제사회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政府支出뿐이라고 판단하여 財政赤字 또는 黑字를 통한 정부지출조절 및 減稅 또는 增稅를 통한 민간부문수요통제를 통하여 사회적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시킬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經濟安定은 자본가=기업이 아니라 第3의 경제주체인 政府의 기능·책무로 자리잡게 되고 실제에 있어서도 완전고용=고용안정,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안정이 모든 현대 국가의 기본적 과제가 되었다.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하여 시장에 참가하면서부터 市場支配의 超巨大企業과 정부사이에는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대기업을 움직이는 기술집단(technostructure)은 국가의 경제적 목표가 '자기들 목표보다 뛰어나고 또 그것을 자기네 목표에 적응시킬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같은 목표에 공명한다' [Galbraith(1967, pp. 309~317)]. 국가가 경제안정, 경제성장, 교육, 과학 및 기술진보, 국방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그런데 갤브레이스에 의할 때 초거대기업도 계획화를 통하여 시장교란을 극복하기 위해 수요안정이 필요하고 昇進과 위신을 위해 성장이 필요하며 자기네 계층(stratum)을 유지, 재생산하기 위해 교육(을 통하여 양성된 人材들)을 필요로 하며 더욱 더 경제적 비중을 크게 헤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을 필요로 하며 끝으로 안정된 수요를 보장해주는 정부의 軍需品調達 즉 국방에 이해관계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市場밖에 자신을 위치시키면서 交換正義가 실현될 수 있는 私法秩序를 마련해 준다는 經濟外的 存在로부터 所有·勞動분리를 계기로 하여 시장에 最低賃金의 강제 등 公法的 介入을 하는 市場拒否의, 즉 시장기능을 부분적으로 정치시키는 存在로 변화한 다음 수정자본주의단계에 와서는 民間經濟主體를 위한 行爲準則을 마련하는 지도·규제 기능에 추가하여 스스로 생산하고 그보다도 더 많이 지출하는 單一의 최대경제주체가 되었다. 정부의 시장규제적, 시장개입적 활동은 단순한 經濟法制定의 영역을 넘어 광범한 社會保障活動을 통하여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왜곡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留意하여야 할 것으로는 수정자본주의이후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목적이 그 이전의 것과는 분명하게 달라졌다는 점이다. 시민사회的基本이념은 자유와 평등 즉 正義의 구현이었고 경제면에서는 交換正義 즉 등가교환으로 구체화되었다. 경쟁자본주의 초기단계에 국가간섭과 前期的 獨占 심지어 共同資本原理를 배척한 것은 그것이 특혜를 주거나 제약을 가함으로써(국가간섭) 또는 대등한 힘의 관계를 무너뜨림으로써(전기적 독점 또는 주식회사) 부등가교환을, 바꾸어 말하면 교환정의의 봉괴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 단결을 금지한 것도 같은 名分 때문이었다.

독점자본주의단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니 독점금지법을 제정한 것도 독점된 재산권이 남용되어 등가교환을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노동조합법을 제정한 것도 雙方獨占形成이 교환정의실현에 유효하다고 판단한 때문이었으며 최저임금을 강제한 公法的 介入 역시 등가교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法은 계속하여 그 내용을 달리하고 범위를 확대시켜 왔지만 항상 그것이 추구한 이념은 교환정의의 실현, 그것도 市場이 실수하는 것을 보완하는 범위안에서의 등가교환실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수정자본주의단계에 와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목적이 교환정의실현과는 전혀 다른 것 즉 교환의 내용이 등가교환이든 부등가교환이든 그것은 정부가 관계할 것이 아니고 정부는 당시 사회적 총수요를 사회적 총공급과 같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不況이라는 경제

적 불안정만 없애면 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국가간섭의 기본목적은 교환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경제안정=시장균형으로 바뀐 것이다. 잉여(surplus)가 절대악이냐 필요악이냐 하는 것이 경제분석 및 경제정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고려대상에서 추방한 것과 마찬가지 경제철학과 방법론에 의하여 微視分野에서 교환정의가 실현되느냐 안되느냐는 고려할 것이 못되고 다만 巨視的으로 사회적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느냐 않느냐만을 고려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4. 맷는 말

시장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었었다. 하나는 命令을 대신하여 무엇을 생산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할 것이며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즉 경제균형의 실현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하나는 교환 이익이 양당사자에게 均分됨으로써 교환정의를 실현시킨다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었다.

시장이 이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첫째 개별적 경제단위=분산적 경제주체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언제 생산, 소비하는가를 자신이 결정하고 둘째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代案을 고려하여——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가격에 주로 의존하면서——결정 하며 세째 가격은 상당 정도 개별화 또는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공급에 반응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調整機制로서 명령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오면서 더 이상 충족될 수 없게 되었다. 분산적 경제주체라는 주체적 조건은 거대한 소수의 경제단위라는 독과점기업 등장과 더불어 소멸되고 경제적 계산과 결정의 기초(reference)는 여전히 가격이었지만 그 가격은 수요·공급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기업이 갖는 시장지배력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가격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결정(price fixing)될 때 가격기제의 존적 시장(price making market)은 이미 엄격한 의미에서의 시장, 가격기제일 수가 없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교환비율은 이미 등가교환을 보장하는 즉 교환정의를 실현시키는 홍정가격이 아니다. 가격이 이처럼 그에게 요청되는 세 가지 조건중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 필연적으로 가격이외의 것이 調整機制로 가세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독점금지법, 노동조합법 등 독점자본주의 초기에 나타났던 시장기능 이용적 정부규제가 후에는 최저임금법등 시장기능억제적 정부규제로 변화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적인 시장기능억제적 규제만으로도 시장균형과 교환정의를 실현시키기 어렵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전면적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규제는 교환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을 버리고 단지 시장균형실현이라고 하는 기술적, 부차적 목적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는 시장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등가교환을 보장한다는 正義實現機構임에 반하여 정부=국가는 언제나 강한 자를 위한 派黨的 利益伸張・守護機構였다는 역사적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겠다. 혼합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국가는 점차 그 계급적 성격을 줄이고 公益的 性格을 크게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아직도 그 派黨性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은 누구를 막론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힘은 이를 시장에서 추방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렇게 노력해 왔었다. 이에 반하여 국가는 ‘본질적으로 힘의 증감을 알려주는 금전등록기이며 서로 抗爭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분배를 알려주고 기록하는 무관심한 저울’[Friedman(1971, p.8)]일 뿐인데 아직도 실제경제사회에서는 힘의 不平等이 크므로 자연히 교환정의에 대한 국가관심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시장균형에 대한 관심만이 큰 것이다.

2차대전이후 유럽資本主義諸國이 社會保障立法을 강화하여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경제적 보장을 국가가 한다는 경향은 얼핏보면 교환정의에 대한 체계적 배려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사회보장이라는 事後調整政策을 독점금지법의 독점해체나 노동조합법에 의한 쌍방독점형성이 대등한 힘의 관계형성을 통하여 事前의으로 등가교환 즉 교환정의 실현을 추구한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환정의는 모든 시장에서 등가교환을 통하여 事前의으로 실현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만 추구할 가치가 있는 이상이다. 이에 반하여 사회보장은 不等價交換의 결과로 교환정의를 유린당한 사람중 일부만을 事後의, 부분적으로 또 施惠的으로 구제하고 있을 뿐이다.

서울大學校 經濟學部 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6392

팩시 : (02) 888-4454

參 考 文 獻

Carr, E.H.(1960) : *The New Society*, London, Macmillan.

Friedman, W.(1971) : *The State and the Rule of Law in a Mixed Economy*, London, Stevens and Sons.

- Galbraith, J.K.(1967) : *The New Industrial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Co.
- Grossman, G.(1974) : *The Economic Systems*, 2th ed., New Jersey, Englewood Cliffs.
- Hansen, A.H.(1941) : *Fiscal Policy and Business Cycles*, New York, W.W. Norton Co. Inc.
- Horvat, B.(1982) :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ism*, Oxford, Martin Robertson.
- Lutz, M.A., and K. Lux(1979) : *The Challenge of Humanistic Economics*, California, Menlo Park, The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
- Mills, C. Wright(1956) : *White Coll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Myrdal, K.G.(1968) : *Asian Drama*, Middlesex, Hammondsworth, Penguin Books.
- Neale, Walter C.(1957) : "The Market in Theory and History," in K. Polanyi et al.(eds.), *Trade and Market in the Early Empire*, New York, The Free Press.
- Nurkse, R.(1961) :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Polanyi, K.(1944) :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 Robbins, L.(1968) :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London, Macmillan.
- Robinson, J.V.(1957) : *An Essay on Marxian Economics*, London, Macmillan and Co., Ltd.
- Samuelson, P.A.(1980) : *Economics; An Introductory Analysis*, 11th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Schumpeter, J.A.(1943) :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Smith, A.(1976) :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2 vols, R. Campbell and A.S. Skinner (eds.), Oxford, Clarendon Press.
- Strachey, J.(1956) :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Victor Gollanz.